

안 제4조제2항 단서중 “시장은”을(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동주관신문사와 협의하여”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공동주관신문사가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안 제10조중 “시장이”를 “서울특별시와 공동주관신문사가”로 한다.

안 제11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은”을(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공동주관신문사는”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공동주관신문사가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안 제10조중 “시장과 공동주관신문사”를 “서울특별시와 공동주관신문사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	발의년월일 : 1998.7.16 발 의 자 : 최충민의원 외 13명
----------	----------	--

1. 수정이유

○시정개혁위원회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인사제도 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참여하여 시의회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13조제1항)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한다.(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예산조치 : 별도 필요조치 없음.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중 “20인”을 “2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	제안년월일 : 1998.7.15 제 안 자 : 정현균의원 외 1명
----------	----------	---

1. 수정이유

○ 시정개혁위원회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인사제도 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13조제1항)
- 위원은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한다.(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 필요조치 없음.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중 "20인"을 "21인"으로 하고, 동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개혁에 관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정의 개혁 방향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2.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 4 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 개혁방안 구체화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

제 6 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조사·연구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또

<p>는 관련기관·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 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p> <p>제 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13</td> <td style="width: 30%;">제출일자: 1998.7.11</td> <td style="width: 40%;">제출자: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제안이유</p> <p>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인사제도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시정개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p> <p>2. 주요골자</p> <p>가. 위원회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함.(안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의 개혁 방향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2)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p>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수: 위원장 2인 포함 20명 이내 (2) 위원장: 행정(1)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의안 번호	13	제출일자: 1998.7.11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위원 공동수행</p> <p>(3) 위 원:시정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실무위원회(안 제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 성:위원장 2인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 (2) 위원장:본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 (3) 위 원: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 <p>(4) 기 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등 개혁방안 구체화 (나)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다)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 <p>라. 의견청취등(안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전심을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p>마. 간 사(안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p>바. 수당등(안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p>3. 참고사항</p> <p>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p> <p>※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나. 예산조치: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등 기정 예산 활용</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개혁에 관한 서</p>
의안 번호	13	제출일자: 1998.7.11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장의 개혁 방향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2.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시장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 4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등 개혁방안 구체화
2.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
제 6 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조사·연구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제 9 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5 조 제 2 항 중 "사용량을 호수로"를 "사용량을 호수(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포함)로"로 하고, 같은 조 제 6 항 중 "이를 절상"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둘째자리 이하는 절사)"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 25 조 제 2 항 및 제 6 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